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561

발의연월일: 2021. 3. 5.

발 의 자 : 김도읍・이 용・이철규

이헌승・구자근・한무경

정운천 • 유상범 • 김태흠

하영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수단의 운행·운항·항행 또는 교통시설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점검·관리하는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의 종류와 시험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시험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들에 대한 응시자격 박탈 등 후속 제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제고하 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제2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로 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제53조제2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3조제2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3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
	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정
	한 방법으로 제53조제2항에 따
	른 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
	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
	키거나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
	되거나 무효로 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제5
	3조제2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
	하지 못한다.